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등이 필요한 어르신들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각종 질환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조은아침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나.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다.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2. 이용대상자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기간

가.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7.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전 요양/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요양/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9.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방문목욕)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 훈련

마. **방문목욕(차량/미이용)서비스**

- 목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목욕여부 결정
- 목욕실시 : 몸, 머리, 얼굴 등 모든 부위
- 목욕완료 :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 후 상태의 관찰 및 측정
  사무용품 준비 및 뒷정리 등 부가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 확인

바.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10.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가.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9%,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11.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3. 계약 해지

1)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26년 (증가액)	2,512,900 (206,500)	2,331,200 (247,800)	1,528,200 (42,500)	1,409,700 (39,100)	1,208,900 (31,900)	676,320 (18,92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30분	16,940	2,541	17,450	2,618
60분	24,580	3,687	25,320	3,798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방문목욕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88,990	13,349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80,230	12,035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50,100	7,515

방문간호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41,710	6,257	42,880	6,432
30분~60분 미만	52,310	7,847	53,770	8,066
60분 이상	62,930	9,440	64,690	9,704

수급자 정보				
수급자	2025년 한도액	등급	본인부담률	2026년 한도액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은 2026. 1. 1. 시행되며 2026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수가가 적용됩니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시설장 (인)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을 받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보호자) (인)